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연구보고서 I

국제결혼 현황과

국적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2002. 8.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 정책자료집을 내며

작년 한해 15,234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사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0%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 남은 화교의 수가 18천여명임을 감안할 때 100년을 넘게 이땅에서 함께 살아온 화교 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외국인이 작년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유입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로의 외국인 편입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해외여행자유향화 조치 이후 조금씩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수가 최근 33만을 넘어섰다. 길게는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도 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적법하게 한국사회에 편입한 이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각급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진정과 소송들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인을 아버지로 둔 베트남인이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친자확인요소를 제기·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인지를 통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이러한 라이파이한의 수는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98년 한국인과 재혼한 40대 한 중국동포 여성은 현행 출입국제도하에서는 전남편 사이에서의 두 자녀를 한국에 입국시킬 수 없어 공여지책으로 국제입양을 하여 자신의 호적에 등재하고 미성년인 둘째 아들만 우선 입국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한해 15천여건의 국제결혼, 17여년의 외국인 노동자 역사를 통한 33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인권위를 통한

각종 진정과 각급 법원 판결들이 우리사회에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민사회에 대한 낮은 인지도, 까다로운 귀화요건, 각종 외국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등은 이제 예전의 그것들로 머무를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져도 혼혈아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이 유난히 심한 우리나라에서 한국국적 취득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차별을 넘어서는 유일한 통로이다.

97년 정부는 취업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엄격히 규제하는 출입국관리법을 회피하는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법을 개정하여 2년 동안의 동거 등의 간이귀화요건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된 지 약 4년이 흐른 지금, 국적취득 협조를 조건으로 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갈취 등의 인권침해 사례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간이귀화의 불능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 배우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의 90% 이상은 외국인 여성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통받는 외국인 여성들을 포함한 외국인 배우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닌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내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행사되기 위하여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법과 제도 정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2년 8월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 회장 김경천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국제결혼의 추이

1. 국제결혼의 현황
2.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

## III. 국제결혼과 관련된 제반 문제

1. 배우자 사망과 상속 문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권
2. 사실혼 문제: 외국인 생부 또는 생모와의 가족결합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
4. 혼인무효소송과 무국적자 문제
5. 기타 인권문제: 국적취득을 빌미로 한 폭행과 갈취
6. 법무부 입장

## IV. 국적법 개정 방향과 해외 입법사례

1. 현행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요건)
2. 해외 입법사례: 독일
3. 주요 개정 방향

## V. 맺음말

별첨 I ~VI    관련 각종 사례들

별첨 VII     관련 기사 (문화일보 2002년 8월 3일)

별첨 VIII    관련 법령들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 문제제기

경제발전을 포함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와 왕래, 일부 농촌층각의 결혼문제 등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은 1991년 6,000여건에서 2001년에는 15,000여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외면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꾸준한 증가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1년 4,300여건에서 5,200여건으로 천여건의 증가에 불과한 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같은 기간 중 600여건에서 10,000여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이러한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양국의 수교 이후 한국남성과 중국여성의 결혼 건수는 수교 첫 해였던 1992년 400여건에서 2001년에는 7,000여건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몽골,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결혼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도 농촌층각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일반 직장인, 사업가, 자영업자 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취업목적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을 피하여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1997년 국적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거주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결혼소개소 등을 통한 성급한 결혼결정,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 사망의 경우와 같이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에 따른 국적취득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을 감안하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다수는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다. 2년 이상의 거주 등 귀화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신원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를 빌미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금품을 요구하는 인권침해사례도 보도되고 있어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 추이와 그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인권침해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결혼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국적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국제결혼의 추이

### 1. 국제결혼 현황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1년 5,012건에서 2001년 15,234건으로 10여년에 걸쳐서 약 3배가량의 증가하였다. 동 기간의 국제결혼 추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6년 15,946건을 정점으로 하여 1999년 10,570건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 정점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림1> 참조).

1997년부터 국제결혼 건수가 감소한데는 첫째,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 배우자도 2년의 거주 등 일정한 귀화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게 국적취득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둘째,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인 남성의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결혼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97년 개정된 국적법 시행 2년 후 2000년부터 국제결혼 건수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회복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국적법 개정 이전의 국제결혼 건수를 능가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추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남성과 중국여성 사이의 결혼 건수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몽골, 러시아 및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 사이의 국제결혼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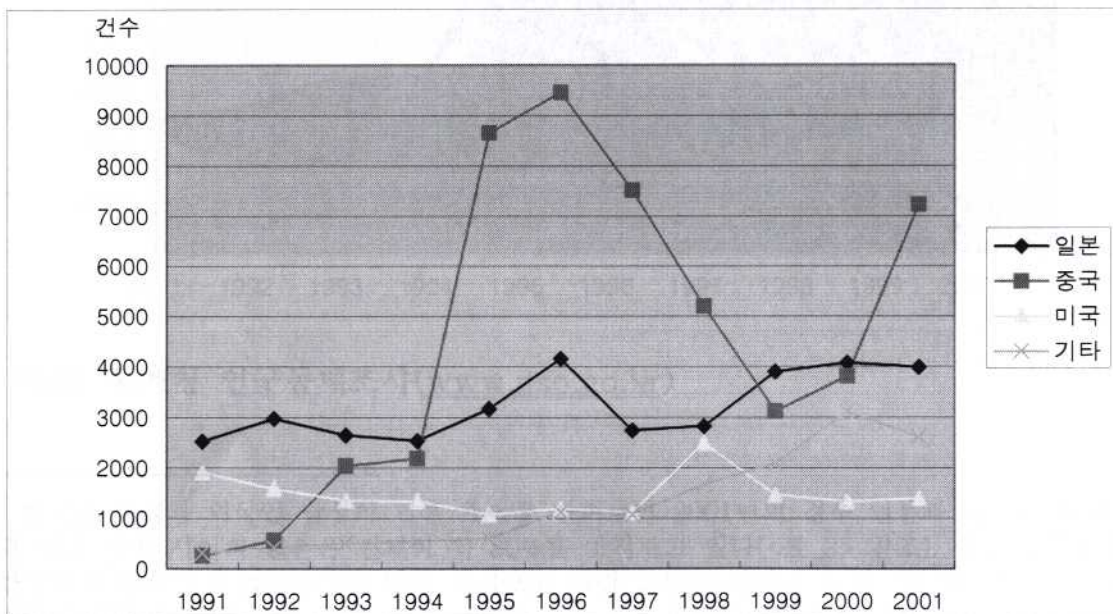


<표 1> 국제결혼 건수 추이

	일본	중국	미국	기타	총건수
1991	2521	262	1912	317	5012
1992	2970	566	1584	414	5534
1993	2644	2036	1357	508	6545
1994	2539	2184	1336	557	6616
1995	3163	8657	1079	595	13494
1996	4159	9462	1193	1132	15946
1997	2745	7513	1115	1075	12448
1998	2822	5202	2495	1669	12188
1999	3897	3117	1470	2086	10570
2000	4072	3804	1330	3113	12319
2001	3987	7223	1397	2627	1523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www.nso.go.kr](http://www.nso.go.kr))

<그림 1> 국제결혼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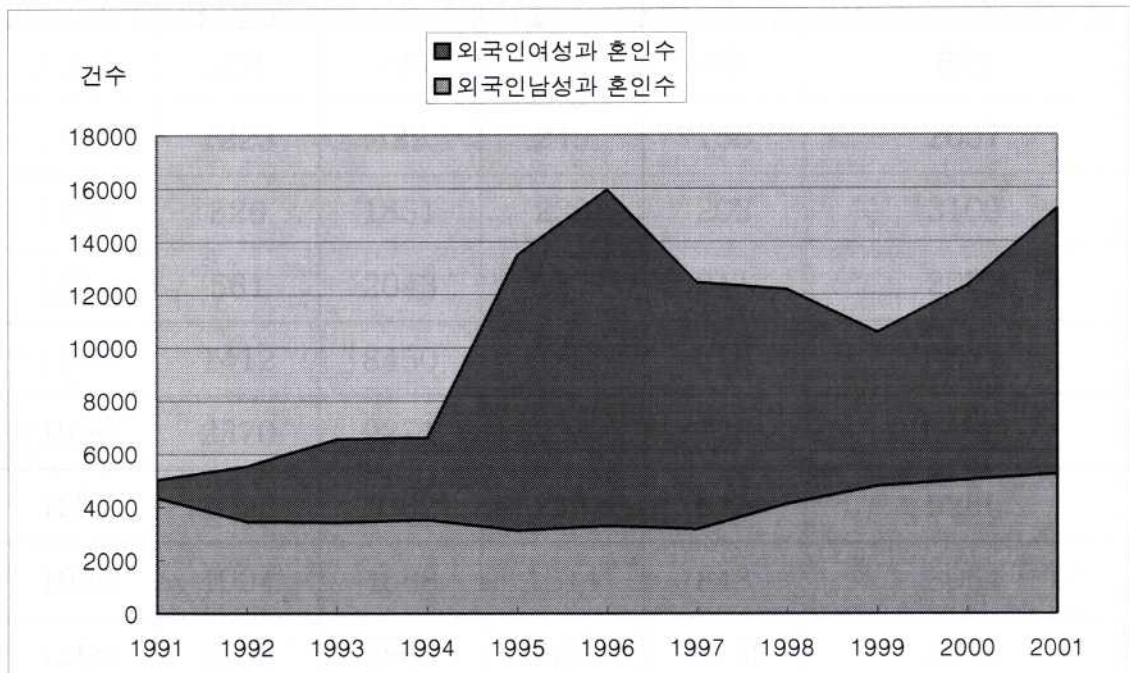




## 2.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다. 지난 11년간 국제결혼의 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건수가 적게는 3천여건에서 많게는 5천여건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sup>1</sup>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는 같은 기간 663건에서 10,0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 추이가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제결혼의 여성화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www.nso.go.kr](http://www.nso.go.kr))

<sup>1</sup>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일본과 미국의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의 결혼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일본에서 한국국적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단일 국적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과 오랜 세월의 미군 주둔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국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 여성과의 결혼 건수가 이토록 급속하게 증가한데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중 양국간의 수교를 들 수 있다. 양국의 수교 이전에도 유학생 등을 통한 중국 여성과 국제결혼이 있었으나 그 수는 매우 미미하였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후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 사이의 결혼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수교 첫해에는 429건 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7,001건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국제결혼의 증감추이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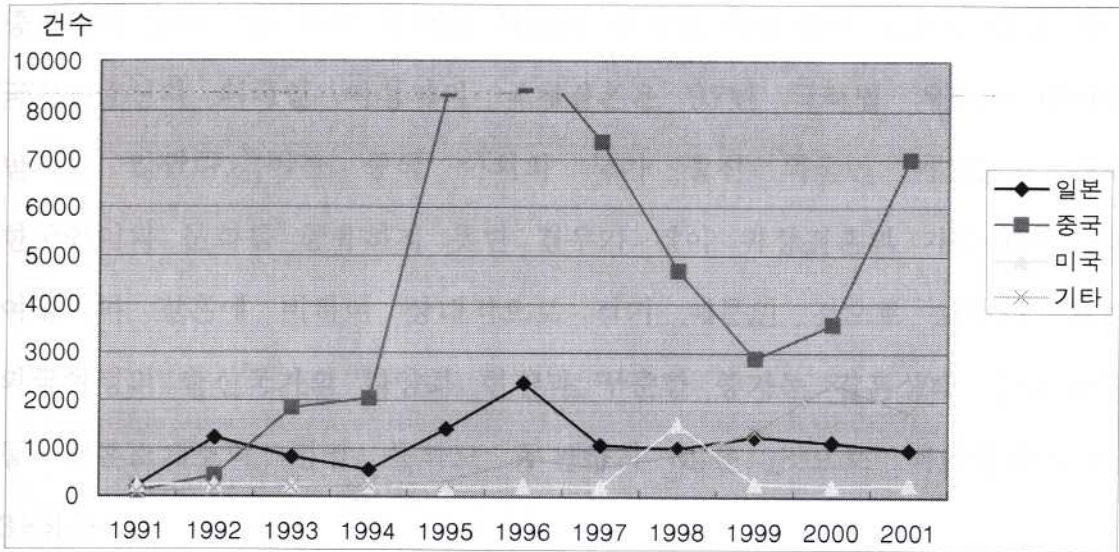
<표 2> 외국인과의 혼인(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일본	중국	미국	기타	총건수
1991	224	106	232	101	663
1992	1223	429	249	156	2057
1993	826	1851	230	202	3109
1994	561	2043	227	241	3072
1995	1412	8450	188	315	10365
1996	2370	9271	228	778	12647
1997	1075	7362	213	616	9266
1998	1004	4688	1514	848	8054
1999	1248	2883	280	1364	5775
2000	1131	3586	235	2352	7304
2001	976	7001	265	1764	1000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www.nso.go.kr](http://www.nso.go.kr))



<그림 3> 외국인과의 혼인(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둘째, 한국내 농촌총각의 결혼난을 계기로 이루어진 연변처녀와의 국제결혼현상이다. 한국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가 일자 결혼소개소를 통하여 농촌 총각들과 조선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 내 연변조선자치주의 중국동포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는데, 최근엔 이러한 국제결혼이 농촌 총각에 한하지 않고,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초혼 뿐만 아니라 재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한국내에서 취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피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위장 결혼문제는 1997년 국적법개정으로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게 2년간 거주 등 일정한 요건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귀하신청을 요건의 부과로 일시적으로 주춤한 바 있으나 2000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결혼의 여성배우자의 출신국도 다양해져 몇 년 전부터는 몽골,

러시아 및 동남아국가 출신의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과 달리 기타 국가 출신의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97년 국적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중국 이외의 국가 출신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와 문화를 공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중국 여성과의 결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여성의 출신국가의 다양화 현상과 꾸준한 증가는 결혼상대 국가 발굴 등 결혼소개소의 성업 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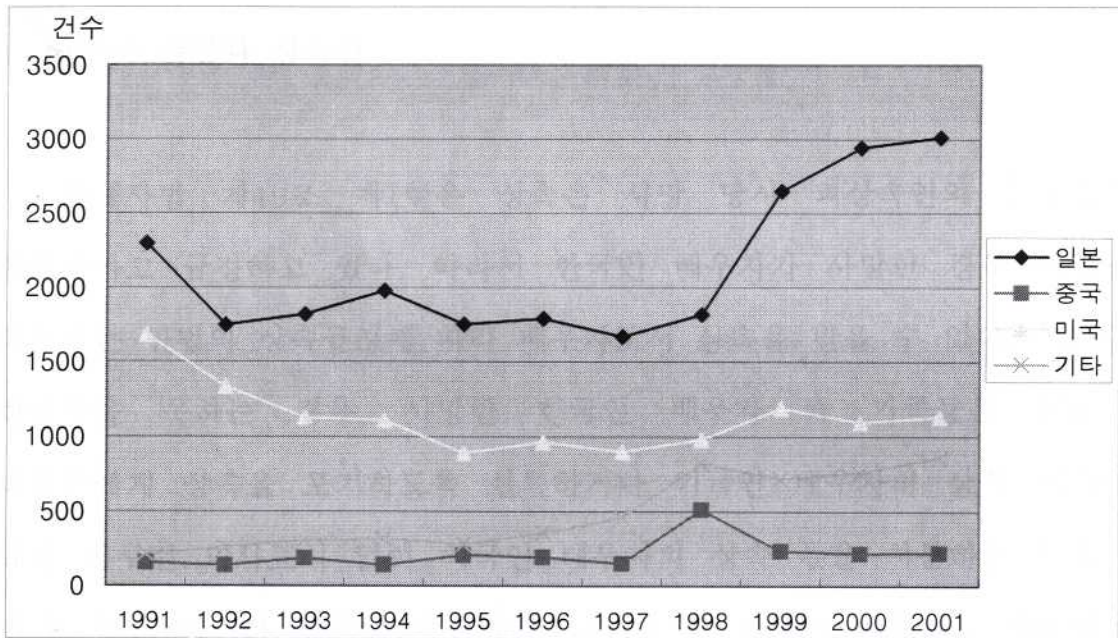
<표 3> 외국인과의 혼인(한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일본	중국	미국	기타	총건수
1991	2297	156	1680	216	4349
1992	1747	137	1335	258	3477
1993	1818	185	1127	306	3436
1994	1978	141	1109	316	3544
1995	1751	207	891	280	3129
1996	1789	191	965	354	3299
1997	1670	151	902	459	3182
1998	1818	514	981	821	4134
1999	2649	234	1190	722	4795
2000	2941	218	1095	761	5015
2001	3011	222	1132	863	522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www.nso.go.kr](http://www.nso.go.kr))



<그림 4> 외국인과의 혼인(한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 III. 국제결혼과 관련된 제반 문제

#### 1.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 사망한 한국인 배우자 측 가족들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포기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몫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외국인 배우자가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사망한 한국인 배우자 측 가족의 신원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체류연장과 자신의 상속분을 맞바꾸거나 한국인 배우자 가족들의 자의적인 재산 처분을 묵인하는 정도 발생한다.

한국어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동포와 달리 자신들의 법적 권리 및 동 권리 침해에 따른 권리 구제에 관한 정보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을 해줄 사람도 부재한 경우가 많아서 권리 침해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는데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일부 가족들은 상속된 재산을 임의 처분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을 두절 하는 등 체류연장을 위한 신원보증 등에 협조하지 않으므로써 외국인 배우자를 가급적 빨리 본국에 돌아가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 2. 사실혼 문제: 외국인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결합권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거하여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을 수 있게 되고 그 외국인은 국제결혼을 통하여 통상 F2비자(거주)를 받아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이미 결혼 한 상태인 경우, 민법의 중혼조항에 의하여 그 외국인배우자는 본국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는 한국인과 결혼할 수 없다.

현행 법과 제도 상 한국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외국인은 국제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녀를 이유로 한국에서 체류연장을 할 수 없으며,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 한국인은 그 외국인을 생부 혹은 생모라는 이유로 초청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가 현실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17년의 외국인 노동자 역사를 감안할 때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다.

이처럼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생부 혹은 생모가 한국에서 자신의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제도에 있어 국제결혼이라는 법률혼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 받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는 인권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요건을 갖추고 귀화신청을 한 후 확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그 배우자가 속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을 받는 가구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수급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별첨 VI>의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인 남편, 페드로 신시아 그리고 양자의 자녀 나라가 하나의 가구로 생활하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나라만이 수급권자가 되어 1인가구(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생계급여로 약 30만원이 지급됨)로 간주되고 나라명의 통장으로 주거급여를 포함한 1인가구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한 가지 문제점은 한국인 자녀의 생계급여통장에 대한 관리권이다. 민법에 의하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통장은 마땅히 외국인 배우자, 즉, 나라의 어머니 신시아가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자녀의 수급권과 관련하여 기입하고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자녀 생계급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 자녀의 친척들이 생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

동사무소 사회과 담당자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인 자녀의 생계급여통장을 친척이 관리하고 그 생계비가 한국인 자녀나 그의 외국인 생부 혹은 생모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개입하여 통장 변경 등을 통하여 급여권자 혹은 그가 속한 가구에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동사무소 등에 알리지 않는 한 이러한 사정을 동사무소측에서



자발적으로 알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 4. 혼인취소와 무국적자 문제

<별첨 III>의 혼인무효판결로 한국국적이 말소된 이화옥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씨는 '97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입국하여 8개월 동안 남편과 살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자 가출하였다. 남편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하여 자신의 혼인이 무효라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씨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직장과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혼인무효소송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모르던 이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적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적회복을 문의 한 바, 적법하게 중국국적포기가 이루어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어서 중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씨는 혼인무효소송이 허위 증인을 내세워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야 말로 한국에도 중국에도 어떠한 법적 신분의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로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거지와 체류 신분 등이 불안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가출신고 및 일방적인 혼인무효소송 등 소송의 제기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 5. 기타 인권문제: 국적취득을 빌미로 한 폭행과 갈취

'97년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2년의 주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한국인 배우자들이 국적취득을 빌미로 외국인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갈취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등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이나 갈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별첨 VII> 관련 기사참조).

## 6. 법무부의 의견

### 1) 위장결혼의 효과

▶ 비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취득이나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하여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혼 당시에 한국인과의 혼인의사가 진정으로 존재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혼인이며 무효하거나 위법한 혼인은 아니다. 다만, 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체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탈법의 소지가 있어 윤리적인 비난을 면키 어렵다.

배우자



## 2) 위장결혼 알선 등을 한 결혼소개업소 혹은 브로커에 대한 처벌

노숙자 등을 매수하여 위장결혼 시켜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으나 위장결혼에 관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브로커를 처벌하는 실례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위장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성립할 당시 당사자 의사가 거짓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 이러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장결혼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자 혹은 결혼소개업소를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 3) 외국인 배우자 체류연장에 대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연장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그리고 가출 등을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이혼의 경우: 결혼이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의 배우자 (F-2)로서는 연장이 되지 않으나 그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나 자녀부양권 등의 문제를 사안별로 다루어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체류연장이 되는 경우 비자 종류는 F2가 아닌 시부모, 자녀의 부양 등을 위한 친지방문동거 비자 F1을 받는다.
- ▶ 사망하는 경우: 시부모,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대체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체류연장이 되는 경우 비자 종류는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 동일하다.
- ▶ 가출 등으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한국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가출신고를 하고, 체류허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는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등을 이유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로부터의 국적취득 및 체류연장을 위한 동의서 또는 신원보증을 받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목적의 상실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 4) 체류연장 현황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국적법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법무부 관계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또는 실종)의 경우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한국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집행 과정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거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줌으로써 국적법 개정 목적을 실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연장을 직접 경험한 사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여기에서 특별한 경우란 시부모님을 함께 살면서 봉양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제한적인 경우를 말함)가 없는 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이 종료되고 체류 목적을 상실하여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일정한 기한(통상 6개월)내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 받았고, 체류연장을 해주는 경우에도 매우 까다롭게 해주었으며, 연장기간도 점차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법무부에서 제안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이나 업무처리개선과 국적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제도의 집행과정에서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고, 둘째, 체류자격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당연하게 따르는 효과일 뿐 적법하고 안정된 체류자격 부여가 곧 국민과 동일한



권리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셋째, 진정한 혼인 의사로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결혼 당시 간이귀화요건에 따라 국적 취득할 것을 기대한 외국인 배우자의 기대 또한 보호 받아야 할 이익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이 단일 국가를 설립하고 이방인과의 공존 경험이 적은 사회인 경우 외국인으로 단순한 합법 체류신분은 극히 불안한 지위이기 때문이다.

#### 5) 귀화허가신청과 체류연장

국적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이 규정하는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귀화신청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한번 접수하면 3번까지 응시의 기회가 주어지고, 3번 응시하여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접수해야 한다. 이때 접수 후 시험을 보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한번 응시 후 다시 응시하기까지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시험은 매주 있다.

#### IV. 국적법 개정 방향과 해외 입법사례

##### 1. 현행 국적법 제6조 제2항

######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상기 조항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외국에서 만나 결혼한 경우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국내에 들어와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외국에서 혼인 한 경우 3년 경과와 1년 주소 요건은 중첩이 가능하므로 혼인 후 외국에서 2년 살고 한국에서 1년 산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 2. 주요 외국의 입법례: 독일

독일, 일본, 미국 등 우리법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3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및 미국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신청자를 구제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3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 간이귀화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1. 독일인 배우자의 사망후 1년내
2.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1년내
3. 혼인으로 인한 자녀가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녀의 부양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는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들의 귀책사유 없이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추 수 없게 된 이들을 구제하는 경우에는,

- ① 귀화를 위한 속칭 「사기 국제결혼」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과
- ② 진정한 결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른 외국인 귀화신청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배우자 사망 후 일정기간 이내에 간이귀화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양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한국인 자녀 양육을 위하여 간이귀화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개정방향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간이귀화요건 충족이 불가능해진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등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한국에 안정적을 체류해야 하는 경우와 국적취득에 대한 협조 등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폭행 또는 갈취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이귀화요건을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간이귀화요건 충족이 불능이 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또는 실종)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의 충족이 불능이 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간이귀화요건 충족 없이도 국적신청을 가능하도록 한다.

#### 2) 한국인 자녀의 보호와 양육, 등을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외도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혼판결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간이귀화요건에 따라 국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한국인 자녀의 양육책임을 맡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간이귀화요건 충족 없이도 국적신청을 가능하도록 한다.

## VI. 맺음말

외국인과의 공존경험이 극히 부재한 우리 사회에 한국 국적을 갖지  
아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이 차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는 차별적인 법과 제도  
및 그 집행을 당연시 여기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아라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킨 우리의 과거 모습을  
볼 때, 한국 국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한국에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서  
단순한 합법 체류 또는 체류 연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라서 한국국적  
취득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97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간이귀화요건 충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한 경우이며, 국적취득 협조를  
미끼로 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갈취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우가  
다른 경우이다.

한국인과 혼인 당시 비록 한국에 취업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거나 그  
목적의 일부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혼인은  
적법하게 보호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원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의적인' 체류연장이라는 불안한 신분이라 아니라 한국 국적을 통한 한국  
사회에 편입이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우리 사회가  
이방인에게도 최소한의 인권 등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갈 때까지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가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가 한국인만의 우리 사회가 아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별첨 I>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 살림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이 름: 루돌프 엘로이사 (가명)

국 적: 필리핀

결혼일: 1999.11.23.

남편사망일: 2000.4.29.

루돌프 엘로이사는 통일교 합동결혼식을 통하여 남편 김씨와 결혼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2000년 4월 남편의 사망과 시댁의 빈곤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결혼 시간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죽음과 가정의 빈곤으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게 된다는 희망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본국으로 돌아 갈 수도 없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필리핀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혼 후 조그만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가족들이 처분하였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떠한 보상보다는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다.



상담소: 서울조선족교회

이 름: 이옥금(가명)

국 적: 중국

결혼일: 1998.9.8.

배우자사망일: 2001.6.10.

(자녀: \_\_\_\_\_ 성별: \_\_\_\_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현재비자상태: 합법 (비자종류F-1-3), 불법체류자 (\_\_\_\_)

이씨는 남편 박씨와 결혼하여 1년 9개월째 살던 중 2001년 6월 10일 남편이 사망하였다. 남편 사후 유산 등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생계를 위해 식당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등록증을 연기하여 오고 있는데, 2002년 5월에도 “형님 사후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해주고 있는데 이거라도 내가 할 도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남편 동생의 적극적인 협조로 체류연장을 받았다.

상당소: 서울조선족교회

이 름: 김설아(가명)

국 적: 중국

결혼일: 1999.8.24.(중국), 99.11.16(한국).

배우자사망일: 2001.2.19.

(자녀: \_\_\_\_\_ 성별: \_\_\_\_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현재비자상태: 합법 (F-1-3), 불법체류자 (\_\_\_)

상속: 시동생과 함께 상속포기각서 제출함

    밀입국으로 한국 입국 후 김씨와 동거 2년 후 김씨와 결혼하였다.  
    동거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간이귀화요건을 이미 충족하는 상태이다.  
    김씨의 남편은 암으로 사망하였고 출입국관리소는 체류연장을 거절하였으나  
    남편 가족들의 탄원으로 체류가 연장되었다.

김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에 국적취득을 진정한 상태이다.

상담소: 서울조선족교회

이 름: 조향영(73.5.4, 가명)

국 적: 중국

결혼일: 1998.11.8.

배우자사망일: 1998.12.30.

(자녀: \_\_\_\_\_ 성별: \_\_\_\_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현재비자상태: 합법 ( ), 불법체류자 ( 0 )

사망원인: 간경화

조씨는 서(67.9.24)씨와 중국에서 98.8.5. 결혼하고 1998.11.8.에 입국하여 결혼 2개월만에 남편이 사망하여 시집의 무관심으로 함께 살지 못하고 식당일 하며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 *시택 등의 신원보증이 어려워 지금은 불법체류상태이다.*



상담소: 서울조선족교회

이 름: 김옥선 (가명)

국 적: 중국

결혼일: 1998.12.7.(입국일)

배우자사망일: 1999.1.4.

(자녀: \_\_\_\_\_ 성별: \_\_\_\_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현재비자상태: 합법 ( 0 ), 불법체류자 ( )

사망원인: 고혈압

김씨는 권(1940.6.19)씨와 결혼하여 살던 중 과음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남편이 사망하였다. 중국에는 출가한지 15년 된 딸이 하나 있으며 남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생업으로는 식당일을 하고 있다.